

쑈 동성애자의 가족 구성권 토론회

일 시 : 2006년 9월 23일 (토) 오후 4시
장 소 : 종로 아이샵 센터 세미나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110-370)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183번지 묘동빌딩 302호
TEL:02-745-7942 FAX:02-744-7916 www.chingusai.net | chingu@chingusai.net

목차

사회자 및 발제자 소개	04
--------------	----

인사말	05
-----	----

기획의도	06
------	----

발제문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	09
------------------------	----

왜 지금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인가	19
-------------------	----

동성애자의 가족구성 차별 실태	27
------------------	----

혼인인가 사회적 결합인가? - 프랑스, 캐나다,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39
--	----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과제와 전략	51
-----------------------	----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 사회

김조광수_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회원

▣ 발제

- ▷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
한영희_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 활동가
- ▷ 왜 지금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인가
이종현_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 ▷ 동성애자의 가족구성 차별 실태
한채윤_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 ▷ 혼인인가 사회적 결합인가? - 프랑스, 캐나다,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은우_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과제와 전략
오가람_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인사의 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이종현입니다.

가족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가족가치관이 새로이 정립되고 있는 시점에, 동성애자의 사회화된 욕구를 파악하여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중반 동성애자 운동 진영의 인권운동이 싹을 틔운 이후 동성애자의 인권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2000년이 지나 법조계에서는 동성혼, 동성커플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동성애자 운동 진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커밍아웃 하기도 힘든 상황에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이야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동거하는 동성커플 수의 증가와 함께 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자신의 주체적인 삶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북미, 북유럽의 동성혼 또는 동성파트너십 등록제도의 입법 과정을 통해 그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말하는 가족의 기능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다르지 않지만 너무나도 다르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동성애자들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동성애자의 가족이야기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9. 23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이종현

기획의도

최근 서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거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역시도 이성애자와 동등하게 가족으로서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실질적인 배우자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도 하고,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거나 새롭게 꾸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성애자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논의 역시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장으로서 토론회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을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연구, 발표함으로써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획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자 합니다.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다섯 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사회에서 가족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것이 변화하는 양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의 의미와 그 미래’에서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이른바 ‘정상가정’ 중심의 가족 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하고 열린 제도로서의 가족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왜 지금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문제를 왜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동성애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 차별 실태’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과 관련해 동성애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들을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서는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국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제도적으로 보장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획득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과제와 전략’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을 전개시키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바람직한 전략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나누며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과 담론을 형성해 내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쟁취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차별적으로 구조화된 공간이자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라는 구성이 ‘정상’이며 나머지는 ‘비정상’ 이고 ‘결손’ 된 공간으로서의 가족에 대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혈연 중심의 강력한 가족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천에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활동가 한영희

● 들어가며

한국가족의 위기론이 근래에 심심치 않게 떠돌고 있다. 혼인률의 감소, 이혼, 재혼률의 증가, 출산률의 하락 등의 변화는 '가족' 이 위기를 맞이하여 해체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한국사회는 마치 당장에 큰일이라도 벌어진 듯이 떠들어대고 있다. 곳곳에서 출산률의 문제를 다같이 고민해야 하는 양, 국가적으로 시급한 위기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실, 가족구조의 이러한 변화가 혈연적, 법적 관계에 의한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이란 전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의 전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오히려 가족의 의미는 가족의 형태와 전형성의 손실과 상관없이 더욱 중요해진 것은 아닐까?

● 공사의 경계

사람들은 흔히 '공사를 구분하라' 라는 말을 한다. 공적 영역, 즉 노동의 세계에서 진행되는 일은 사적영역, 즉 가정(가족의 공간)과 분리되어 사고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쉽게 주고받는 말 속에서 공적영역은 사적영역과 분리되는 것이 옳은 듯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 구분의 원칙은 일터와 가정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자 했던 근대화 과정의 파생물이었다. (조은 외, 1997)

일터와 가정이 혼합되어 있던 시기, 놀이와 노동이 가족구성원들 간의 협동과 갈등 속에 함께 이루어지던 형태에서 산업의 발달로 집중적 노동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때에 노동은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자연스럽게 가정은 자신만의 온전한 역할을 차지하였고 가정은 노동의 피로를 풀어줄 안식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었다.(조은 외, 1997) 산업의 발달, 생산성의 향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동자의 임금과 가족임금제의 형식을 갖추었고 가족은 일인생계부양자 모델의 형태를 갖추었다. 주로 남성은 일인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여성에 비해 열린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을 제외한 다른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남성생계부양자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이성애자 가족의 형태는 남성=생계부양자=노동의 주체, 여성=가사전담자=가족 내 정서적 역할 수행의 주체와 같은 등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중산층 중심¹⁾의 가족의 상(像)은 전형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이후 정상가족의 틀로서 작동하였다. 결국 노동의 세계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가족은 노동의 세계에서 지친 남성생계부양자를 쉬게 하는 유일한 안식처가 된 것이다.(찰스 패너티, 1997)

이렇듯, 이성애 가족에서 공사의 분리는 성별화된 특징을 가지며, 성별화를 중심으로 가치평가되었다. 공적인 영역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비해 중요한 것이었고 공적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경제공동체적 특성은 강조되었다. 가족의 경제공동체의 특성은 결국 사적영역, 즉 가정이 공적영역, 즉 일터의 영역을 보조하여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뿐더러 이 모든 것은 남성, 아버지, 남편(생계부양자)을 제외한 다른 가족구성원의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 그만큼 흔히 사람들이 내뱉는 말과는 달리 '공사분리'는 이미 공사의 긴밀한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일터와 가족의 분리는 긴밀한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근대화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지속되었다.

● 가족신화 vs 실체로서의 가족

현재 노동의 세계는 불안정성과 조망불가능성의 특징을 가진다.(엘리자베트 벡-게린스하임, 2005) 지속적인 자본주의 체계의 불황 주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

1) 일인생계부양자 모델은 전적으로 중산층적 모델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노동계층, 빈민층의 가족은 다수의 생계부양자 모델을 갖는 경향이 있다. 다가구원 취업과 소비의 최소화라는 가족단위 생존전략이 저소득층의 가족전략으로 나타난다.(김익기, 1988; 조은, 1990; 김미숙, 1990)

자유주의적 대안은 노동의 세계를 더욱 가혹한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국가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정리될 수 있는 노동자의 위치는 극도로 불안정하였다. 유사-종신제 고용형태가 주는 노동자 생활의 안정성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의 상시적인 유연화 전략에 의해 흔들렸다. 이러한 노동의 세계의 냉엄한 현실은 사적영역, 즉 가정의 이상화된 가치인 애정과 친밀성에 의해 위로받았다. 언제라도 노동의 세계에서의 위협은 '가족'에 의해 언제든지 상쇄 가능한 것이 되어버렸다.

한국사회의 경우, IMF 구제금융의 빚을 지고 있던 당시, 국가와 기업의 투자회피,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이 이루어지자, '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족의 생계부양자였던 '아빠, 힘내세요'를 외쳤다. 초라한 등을 보이며 돌아앉은 아버지의 뒷모습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가족들의 다각적인 노력도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고안되었다. 노동의 세계에 위기가 발생하면서 가족의 힘, 가족의 가치는 강조된다. 바로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랑과 친밀성의 관계로서 가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가족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강조는 결국 가족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이 경제공동체,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은 신화에 불과하다. 단지 다양한 가족들 가운데 한 형태에 불과한 아버지, 어머니,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경제적 운명공동체라는 가족형태는 마치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인 양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가족들을 유지해야만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는 것은 오랜 기간 가족을 가부장적, 이성애 중심으로만 전유하는 것이다. 결국 가족은 하나의 이데올로기화되어 사회에 작동하였다.

1) 가족으로서의 인식과 친밀성의 확인

경제공동체, 운명공동체, 사랑과 친밀성의 공동체라는 '가족'이라는 가족신화와 실제의 가족은 꼭 부합하지 않는다. 가족구성원들이 스스로가 가족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정도에 따라 각기 달리 가족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가족 내의 성별, 세대, 혈연, 제도적 혼인여부 등의 변수에 의해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을 달리 경험하고 인식하며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이때 개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가족은 결코 법적, 사회적으로 정의내리는 가족의 정의와 다르다. 결코 전형적인 상(像)으

로서의 '가족', 즉 아버지와 어머니, 그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엘리자베트 벡-게린스하임은 그녀의 저서(2005)에서 개인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가족의 범위가 다르다는 예를 보여준다. 나의 가족이 나, 나의 남자형제, 나의 아버지, 그의 부인, 그리고 세 명의 이복형제자매들로 이루어져있다면, 내가 인식하는 가족과 아버지가 인식하는 가족, 세 명의 이복형제자매들이 인식하는 가족의 범위는 모두 달라질 수 있다. 나는 나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구성원을 가족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만을 가족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법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가족에 대한 인식은 가족 내 구성원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친인척 관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성별, 세대, 혈연, 제도적 혼인여부 등에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를 친척 혹은 인척으로 인식하는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누구에 의해 인식되는 가족인가에 따라 가족의 범주와 인식은 달라진다. 또한 가족에 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애정과 친밀성의 관계라는 정서적인 관계를 당연시할 수도 없다.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누구를 가족이라고 인식하는가에 따라 가족에 대한 밀착 감정과 친밀성은 재구성²⁾될 수 있다.

2) 해석되는 가족

가족구성원들이 가족 내에서 중요하게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 역시 다르다. 예를 들어, 이성애 가족 안에서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정서적 역할을 요구받는다. 반면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그래서 언제나 지친 남편과 아버지를 정서적으로 보호하며 위로해야하는 역할은 여성에게 주어진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가족 외의 어떠한 사회적 기회로부터 제한된다. 자연스럽게 가족은 여성들의 노동공간으로 최상의 조건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성의 입장에서 가족의 구성(결혼)이란 결코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사람들이 결혼을 고려할 때, 특히 이성애 결혼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결혼을 고려하는 조건에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여성들은 파트너의 경제적 능력을 중요시하고 남성들은 파트너의 외모와 성격을 중요시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 실제 성별에 따

2) 수많은 재혼가족의 경우, 감정과 친밀성은 해체되기도, 다시 구성되기도 한다.

라 결혼을 고려하는 조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물론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궁이 가는 이야기이다. 적어도 여성들이 경제적 요건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결혼 외의 다른 제도 속에서 여성들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기회가 그만큼 제한되어 있고, 설령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경험하게 될 어려움이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요건을 고려한 결혼은 어쩌면 현명한 자기전략일 것이다. 반면 남성들이 파트너의 외모와 성격을 주요하게 고려한다는 이유는 힘들게 일하는 자신들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여성 파트너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이성애 가족이 구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루어진다. 남성 생계부양자를 가장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은 가장의 활동을 중심으로 가족의 모든 활동은 재조정된다. 그리고 가장을 제외한 다른 가족구성원들은 가장의 활동을 지지, 지원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 가족의 현실 속에서는 가장 외의 다른 가족구성원이 부양자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기도 하며, 정서적 역할 수행자의 위치를 누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남성생계부양자의 실직에 맞서 여성들이 생계부양의 의무를 짊어진다고 해도 자신에게 부과된 다른 의무, 가사노동과 정서적 역할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어머니, 아내로서의 위치는 무엇보다도 다른 가족구성원들을 보살피고 돌보기 위한 다양한 노동-가사노동과 감정노동 등-이 부여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성별에 따른 이성애 가족의 부정의(不正義)하고 불평등한 구조는 성별에 따라 가족의 의미를 달리 인식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남성은 가족을 자신이 편하게 쉬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정서적 친밀성의 관계로서 인식하기 쉬운 반면, 여성은 가족을 경제공동체이자 운명공동체로서 인식하기 쉽다. 성별에 따른 가족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상황은 가족구성원이 결코 동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동질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래서 가족은 구성원에 따라 달리 경험되고 해석되는 하나의 경험적 구성물이기도 하다.

● 선택의 기로에 선 가족, 변화하는 가족

가족 내의 지위, 권력의 차이는 결국 가족구조의 변화를 낳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형적 가족의 형태가 위기를 맞이하여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은 개개인이 제도상의 결

혼이나 가족을 생각할 때, 먼저 자신들이 얻게 되는 손익을 충실히 계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인이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가족을 경험하면서 가족을 구성할 때, 아이를 출산할 때, 가정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 등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제도상의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이 가지는 한계를 개인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족 내의 위치에 따라, 경험에 따라 가족을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경험하는 것은 결국 냉철한 노동의 세계에서 경험과 유사한 질문들을 떠올리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의 세계에서 개인들은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할 것이며, 얼마의 임금을 받고,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 잘 보여 불편함 없이 지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나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등의 질문을 한다. 마찬가지로 누구와 살 것이며, 함께 살 것인지, 제도상의 결혼을 할 것인지, 아이를 낳을 것인지, 일은 계속 할 것인지 등의 질문을 가족에서 한다. 결국 가족 내 자신의 위치 속에서 개인은 끊임없는 선택적 상황을 맞이하고 나름의 결정을 내린다. 결혼, 출산/입양, 양육의 문제가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과정인 양, 맞이하던 시기는 지나고 이제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시기인 것이다. 선택의 상황에서 개인은 가족을 다시 생각하고 결정하며 이를 통해 가족의 구조와 의미는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가족을 구성, 재구성함에 있어 이러한 성찰적인 태도는 가족구조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며, 가족을 혈연중심, 제도중심의 단일한 형태가 아닌 다양화시키는 요인이다.

● 가족의 재발견

앞서도 언급했듯이, 가족구조상, 형태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화화되는 가족의 가치는 친밀성의 가치이다. 이는 단지 가족담론에서만 부각되는 가치가 아니다.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영역에 속하는 모든 관계에서 친밀성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도 말했듯이 공적영역으로 치부되는 노동의 세계와 연관된다. 노동의 현실이 불안정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노동의 세계에서 개인이 맺게 되는 관계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할수록 노동의 세계에서 개인은 원자화된다. 결코 누구에게 손 내밀기 어려운 피상적인 관계가 노동의 세계를 지배할수록 개인은 애정과 친밀성에 연연하게 된다.(울리히 벡, 2002) 울리히

백의 말처럼 노동의 세계 속에서 맺게 되는 피상적 관계와 상반되는 사랑과 친밀성을 기본으로 하는 관계의 의미는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일터에서 받게 되는 모든 어려움, 불안정성, 불투명성을 토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개인이 친밀성을 나눌 수 있는 사적영역의 중요성이 증대된다³⁾.(기든스, 1996)

친밀성의 영역은 단지 가족으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가족구성원들 간의 불평등한 위계와 권력의 문제가 존재하는 한, 가족의 애정과 친밀성의 가치는 단지 신화일 뿐,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애정과 친밀성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적영역의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공사의 구조변동에서 가족구성원 누구나 친밀성의 경험을 통한 가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가족 내의 위계와 권력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미 전형적 '가족'의 문제를 인식하고 '가족'의 전형성을 거부하는 가족구조의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이 친밀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동거가족, 동거여부를 떠난 파트너십의 관계, 비혈연 공동체 가족들이 전형적 가족의 상(像)을 넘어서고 있다. 단지 일대일의 배타적, 독점적 관계의 이기주의에서 보다 더 확장된 개념의 공동체,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 가족의 재구성 : 보살핌 의무에서 보살핌의 윤리로

가족을 둘러싼 이러한 다양성의 스펙트럼이 확장되면서 오히려 이를 불안해하는 것은 국가이다. 한국가족의 위기론은 가족구조의 변화라는 현실적 변화에 맞추어 대두되고 있다. 국가는 '위기', '해체'라는 용어 속에 전형적 가족의 변화에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는 전형적 '가족', 즉 '정상가족'을 단위로 하여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에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해왔다.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는 보살핌 노동을 전제로 한 전형적(정상) '가족'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그의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성을 벗어나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혈연, 세대, 성별을 중심의 출산, 양육, 부양의 의무로부터 점차 탈피하고 있다.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전 시기, 전형적 가족이 깊어지고 있던 짐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족 내의 위계 속에서 일방적

3) 기든스는 이를 친밀성 영역의 혁명이라 일컫는다.

으로 주어졌던 보살핌의 의무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가족의 변화를 국가는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제 국가는 가족에게 부여했던 사회적 짐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사실, 보살핌의 윤리란 단지 혈연 중심, 제도 중심의 가족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정의(定意), 혈연, 세대, 이성애 중심성 등을 넘어서는다면, 보살핌의 윤리는 가족공동체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할 수 있다. 구태의연한 가족의 전형성이 무너지고, 친밀성의 관계가 중시되는 시대에 가족도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가족의 의미가 가족신화와 이데올로기가 아닌 경험의 실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친밀성의 관계에서 보살핌의 윤리는 유지될 수 있고, 의무가 아닌 이러한 보살핌의 윤리는 가족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그리고 공동체 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

● 나오며

가족구조의 변화는 지금까지 결코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 가족구조의 변화, 형태상의 변화는 전형적인 정상가족이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의 한계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가지는 의미는 조금씩 변화하면서 충분한 의미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가족을 정상가족의 범주로만, 단일 형태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친밀성의 관계중심으로 개인들이 자유로운 가족구성과 해체의 토대가 마련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할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제도가 구비된다면, 가족은 실재 없는 허상의 굴레가 아니라 생동하는 제도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들을 인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가족신화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점차 해체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1996.

이재경,
『가족의 이름으로-한국근대가족과 페미니즘』, 또 하나의 문화, 2003.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 박은주 옮김,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새물결, 2005.

울리히 벡,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 강수영 외 옮김,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 2002.

조은 · 이정옥 · 조주현,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왜 지금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인가?”

이 종 현 _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가. 한국의 동성애자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의 가족

한국의 동성애자는 가족이스럽다.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현대인 누구나 가족이 그럴 것이다. 일명 ‘정상가족(The family)’의 이미지는 ‘즐거운 나의 집’의 노래 가사처럼 ‘내 나라 내 기쁨이 길이 쉬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꽃피고 새 우는 집’ 일지도 모른다. ‘건강한(?)’ 가족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건강할수록 현대인은 상처받는다. 100% 건강한 인간도 결국 죽는 것처럼, 건강하고 정상이라는 수사법으로 이야기하는 완벽한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가족 이야기를 게이스럽게 비튼 ABC 방송국의 드라마 <위험한 주부들(Desperate Housewives)>의 표제어인 ‘누구나 더러운 빨랫감이 있다(Everyone has a dirty little laundry)’처럼 가족 이야기는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는 말로 꾸밀 수 없다. 현대인 누구나 그리워하는 가족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 충분한 정서적인 교감과 함께 끈처럼 이어주는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다. 한국의 동성애자 역시 이러한 가족을 꿈꾼다. 다만 이성애자보다 더 가족이 그리운 이유는 자신의 혈족이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또는 못할)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가족제도를 부정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호주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혈연으로 이어진 이성애 중심의 가족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모순에서 오는 상황이다.

양 부모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전 세계적으로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근대의 발명품이다¹⁾. 그러나 21세기에는 이 발명품의 인

1) 조주은(2005), ‘호주제 폐지 이후 우리 사회 가족을 말한다.’, ‘호적제도 폐해사례 증언발언대 “이등(二等)국민 신분 등록제를 말한다.” 자료집에서.

기가 시들하다. 지금 그 견고한 구조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구조를 비집고 나오는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한다. 한부모가족, 부부가족, 일인가족, 동성가족, 국제결혼으로 인한 가족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한 가족형태의 삶이 있다. 새로운 가치치기로 구조 밖과 연결하고 있는 이 다양한 가족 중에서 동성애자는 방황하고 있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가족에 커밍아웃한 이후의 상황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의 동성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을 숨기고 조용히 비혼자 또는 미혼자처럼 생을 마감하거나, 적당히 마음 맞는 이성애자와 가정을 꾸리고 살 수 밖에 없다. 이는 21세기 비, 미혼 동성애자들이 동성 커플 또는 동성 친구들과 동거를 하며 한 가족처럼 살더라도 자신의 혈족과의 관계는 유지하기 힘들다는 증거다. 자신의 성 정체성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의 관계를 해소해야하는 논지는 다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시간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결국 동성애자 스스로 책임져야한다. 이는 한국의 동성애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의 개인 행복추구권을 누릴 권리가 없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형성하는 가족인 동성 커플 또는 동성애자 가족- 동성애자 친구들이 서로 다년간 동거하며 삶을 공유하는 가족- 은 같은 성적 지향성을 기반으로 형성한 사회적 구성체다. 이 구성체의 구성원이 꿈꾸는 가족은 남다르지 않다. 현대인이 원하는 가족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서로의 행복을 같이 추구하지는 이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가족의 정체성의 한계를 짓는 혈연주의 중심의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다양한 기능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주체적인 개인이 또 다른 주체적인 가족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꼭 동성애자만이 아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스테판 라딜(Stefan Hradil)은 자신의 저서 『독신자사회』에서 '독일 인구 16%가 혼자 살고 있고, 이들은 홀로 격리되어 살고 있지 않고 오히려 많은 지인들과 친구들로 구성된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 했다²⁾. 독신자적 존재 방식의 선택이 자유의지도 있겠지만 저마다 개인적인 이유로 파트너와의 동거하는 삶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독신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넓혀가며 더 많은 지인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삶을 스스로 주체화하고 하고

2) 아르민 폰스 엠크(2000),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스테판 라딜' 편에서 발췌.

있다는 증거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고립된 문화에서 한국의 동성애자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에서 스스로 더 삶을 주체화할 공간을 찾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21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 ‘Speak Out’ 에서 마님(38세)은 연인관계가 아닌 동성애자인 한 명의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일종의 대안가족인 셈이다. 이들은 이 공동체를 통해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그 형태가 독신이든, 동성 커플이든, 또는 동성애자 가족이든 기존의 가족의 규범에서 더 나아가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족의 기능이 수반된 대안적인 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 동성애자가 말하는 가족구성권은?

덴마크는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동성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이다. 그 시기는 1989년 6월 7일이며, 그 후 이미 17년 이상 동성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이 법에 등록된 동성혼 관계의 수도 인구에 비하여 가장 많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덴마크에서는 약 4,400명, 즉 2,200쌍이 동성적 동반자 관계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된 동성혼관계 중 약 130쌍은 사망으로, 약 270쌍은 동성혼 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동성혼이 종료되었다고 한다. 덴마크에 이어 스칸디나비아국가에서 동성혼을 규율한 노르웨이는 동성혼제도를 199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131쌍(남자가 77쌍, 여자가 54쌍) 정도가 동성혼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³⁾.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과정을 거친 유럽국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이 혼인의 형태이든, 파트너십 형태이든 가족을 꾸리고 같이 살며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갖으려한다는 것이다. 등록 커플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비추어 볼 때, 동성커플의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도 커지지 말란 법은 없다. 이미 10년을 넘게 동성커플로 지내온 커플도 상당하다.

3) 김민중(2003), ‘동성애’,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동성 커플, 동성애 가족은 대안 가족으로 불린다. 독신가족, 자발적 무자녀가족, 동거가족 등 이러한 대안적 가족의 발단과 목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자아실현, 성적 자유, 동성 커플, 여권 신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⁴⁾. 이러한 대안가족의 출현은 가족구성에 관한 다양성의 증가로 받아들여야하고, 현대세계의 도전을 맞아 새로운 가족생활의 형태가 발달하고, 또한 가족들이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키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방식을 찾으려 애쓰는 결과로 보는 자유주의적 입장이 있다⁵⁾.

동성애자들이 파트너 또는 동성애자 친구와 가족처럼 동거하며 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욕구는 기존의 가족체계가 주는 경직성과 부자연스러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자신의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와 함께 공간을 꾸려나가는 지극히 인간다운 태도의 발현인 것이다. 또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시각에서 볼 때 자발적으로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성부부보다 동성커플이 자녀를 입양하여 가정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측면을 고려해보면, 어쩌면 더욱 정상적인 가족적 삶을 추구하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⁶⁾. 또한 기존의 틀에 박힌 성역할에 따른 가사분담은 동성 커플이나 동성애가족에서 보다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정상가족이 아니어서 겪는 차별은 무시할 수 없다. 동성애자 역시 마찬가지다. 동성 커플 중 아우팅 때문에 동성애자혐오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상당하다. 같은 가족의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려고 하는 협박 등 가족 대 동성애자 사이의 문제는 심각하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 직장에서 가족이 아니어서 오는 수당 관련 차별 요소들은 이성애자 정상가족에 속한 집단에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다.

4) Faith R, Elliot/안병철, 서동인 역, 가족 사회학, 235면.

5) 변화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가족정책의 방향(제37회 여성대회 특강,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 10. 6), 27~28면

6) 강달천(2000),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사례

▶ 자주 가는 커플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커플은 레즈비언 커플로 커플 중 1인의 어머니와 함께 3명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커플 중 1인의 오빠가 커플사이를 눈치 채서 집으로 찾아와 돌에게 폭력을 가하고 갈라서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홈페이지에 슬프게 올라와 있었다.

▶ 동성커플 간 폭력사건 등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들로부터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것 자체로 놀림 당하고, 인권침해 당함

▶ 어머니 칠순 잔치 때 제 생각에는 다 모이니까 커밍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누나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누나 생각에는 아마 매형도 있었고, 조카가 있었기 때문에 차마 내 동생이 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중략> 누나가 네가 그렇게 드러내는 것(게이 부부라는 것을)이 싫다고⁷⁾.

과거의 가족이란 구성원을 든든하게 받쳐 주는 버팀목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구성원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가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다. 현대사회의 개개인의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주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동성애자는 제도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 동성 커플, 동성애자 가족을 꾸리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의 의미로 대변되는 다른 대안가족에도 이같은 차별과 고통은 마찬가지다.

다. 한국의 동성커플, 동성애자 가족의 미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동성 커플은 불안한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다. 한 동성 커플은 동대문 모 의류 상가에서 6년간 동업으로 의류가게를 운영했으나, 재산분할에 대

7) 한국여성민우회(2005), 경계와 차별을 넘어~ '가족' 차별 드러내기, 실천적 대안찾기 자료집에서 발췌

한 어려움과 관계지속 시 발생할 기타 문제로 인해 최근 동거 관계를 해소해야했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유흥주점을 동성 커플과 운영하고 있는 한 동성애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현 상황을 걱정하며, 동성 커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해 상담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점점 자연스럽게 동성커플의 재산 분할 및 해소와 관련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사간의 애정 결핍 및 성격 차이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 미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해소해야하는 것이다. ‘행복할 수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을 미래를 더 이상 함께할 힘이 없다.’고 말한 한 동성커플의 이야기는 동성애자들 스스로에게는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꿈꾸는 인간 본연의 꿈을 꿀 수 없게 만든다.

영화〈메존 드 히미코(メゾン・ド・ヒミコ: Mezon Do Himiko, 2005)〉는 가족들과는 관계를 끊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는 나이든 게이들의 실버타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가족이 있어도 자신이 게이임을 커밍아웃하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 홀로 노년을 보내야하는 게이들끼리 함께 모여 서로 힘이 되어주고, 명절이나 기념일도 같이 지내며 노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에서 동성애자의 미래는 선명하지 못하다. 영화 속 요양시설은 운영비 부족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 인간은 누구나 노년이 고독하고, 외롭지만 영화 속 게이는 그 끝이 더욱 힘들다. 이는 경제력이 풍부한 노년의 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상속할 수 있는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올 것이다. 암울한 미래라 할지라도 이를 같이 나누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또한 일정한 기간동안 동반자적 관계를 해온 관계에서 상호 상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정이 된다면 동성애자들의 미래가 그리 힘들지 만은 않을 것이다.

이성애적 결합을 기초로 하는 결혼제도는 국가에서 강제하는 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완전한 선택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토피아로서의 가족에 대한 기대는 가족생활의 내용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가족생활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⁸⁾. 동성커플, 동성애자 가족처럼 다양한 가족형태를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회적, 문화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점점 더 나아가 동성애자의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함께 이

8) 강달천(2000),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들이 맺는 가족형태를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사고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성애자 혈연가족의 체계로 제한되어 인식하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만이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에서는 이 범주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왜곡되고 억압받고 차별받으며,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양부모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은 전체 가족형태 중에서 50%정도—물론 이 50% 안에는 재혼가족도 포함되고 있다—에 불과하다⁹⁾. 동성결혼의 반대진영이 주장하는 역사적 가족제도의 위기론은 관점의 변화를 부른다. 더 이상 위기라는 미명하에 담을 쌓을 것이 아니라, 현재 직면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변화하는 방향을 따라 개인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동성애가 역사적 가족제도의 위기를 불러올 만큼 위험한지는 역사가 이미 증명해주고 있다. 동성애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동성애자가 가족구성권을 요구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도 역사 속에서 흐르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는 결국 사회가 개인이 원하는 다양한 생활 방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주체적 삶의 경로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내야 한다는 것이다.

9) 조주은(2005), ‘호주제 폐지 이후 우리 사회 가족을 말한다.’,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 “이등(二等)국민 신분 등록제를 말한다.” 자료집에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 차별 실태

한채윤_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1. 들어가며

개인적으로 2002년에 <사회비평> 가을호에 ‘동성애: 결혼과 가족의 확일성 깨기’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되면서 동성간 결혼과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어, 2004년 퀴어문화축제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외국의 동성 결혼 현황 - 전통적 의미의 결혼과 동성애자의 인권존중과의 갈등, 투쟁 그리고 타협 과정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자료들을 모으고 연구를 시작했다. 2005년초엔, 국가인권위 용역으로 진행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때도 역시 ‘가족구성권’에 대한 부분을 맡았었다. 아마도, 이런 연유로 <친구사이>에서 이번 토론회에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다.

맡겨진 주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동성애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차별 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21일, <친구사이>에서 주최한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 : 스피크 아웃’에서 거의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것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굳이 필자에게 맡긴 이유엔 뭔가 새로운 것을 더해보라는 속뜻이 있는 듯 해 적잖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번 원고에서는 가족구성권 차별 실태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에 대한 조

심스런 의견도 더해 보았다. 부득이 본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원고만을 전달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크며,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사례들은 5월 21일 <스피크아웃>에서 발표된 사례들을 다룬 신문기사들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인권기초현황조사> 보고서에 실린 사례들도 그대로 인용하였다.

2. 기보고된 차별 사례들

차별 사례들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보고서에 기술된 것들과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에서 나온 것들이 있다. 이 두 곳에서 나온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료결정권

입원과 수술 여부의 동의, 치료 과정에 대한 결정, 면회 자격, 사망 확인 등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보호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사례1. _____
동성 배우자와 6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천정남 씨는 그동안 가족들의 인정도 받는 등 별 문제없이 살아 왔다. 그러나 얼마 전 자신이 수술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실감했다고 한다. 수술과 입원 수속을 밟는 데 필요한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천 씨는 "내가 입원을 했을 때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간호해주는 이는 나의 파트너인데 그는 법적 보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면서 "특히 나는 모든 가족이 다 다른 지방에 살고 있어 더욱 곤란했다"고 말했다. 결

국 천 씨는 간호사가 천 씨의 부모님께 전화를 해 구두로 동의를 받고서야 수술을 할 수 있었다.

- 프레시안 / 2006년 5월 23일자

사례2. _____
파트너가 응급수술을 하게 돼, 병원에 급히 함께 간 레즈비언 A씨(28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A씨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친구'로 불려야 했다. '친구'가 아니라 '가족'임을 반복해 설명하는 A씨에게, 병원 측은 '가족을 부르든지 보증금으로 100만원을 주어야 수술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 한다. 결국 게이 친구를 불러 파트너의 남편이라고 하고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 일다 / 2006년 5월 24일자

사례3. _____
20대 중반의 레즈비언 커플인 A씨는 늦은 밤에 파트너 B씨가 갑작스런 출혈을 일으켜 급히 응급실로 갔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이 보호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해 가족들은 모두 지방에 살아 지금 올 수 없다고 하자, 병원에서 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보호자가 되려면 100만원의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가난한 살림이었던 탓에 밤중에 100만원을 구할 수 없었던 A씨는 하는 수없이 멀리 사는 B씨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A씨는 다행히 B씨의 병이 크지 않아서 친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지만, 만약 상태가 위중하기라도 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다. 돈이 아주 많거나 친가족 가까이엔 항상 붙어살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 자료 중, 2003년 12월

2) 재산권

파트너의 사망에 따른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성간 부부의 경우엔 남편 사망시 재산의 50%는 부인에게 상속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5억원 미만의 재산이 상속될 때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결별이 아니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사례1.

김 씨는 20년 동안 같이 살던 이와 헤어졌을 때 수중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이성애 부부라면 헤어질 때 위자료를 받거나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동성애 부부에게는 그런 것을 보장해줄 법적 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다. 현재도 그는 비슷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 김 씨는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사람으로 '당연히' 자신의 파트너를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법률상 파트너가 김 씨의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탓에 별도의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 프레시안 / 2006년 5월 23일자

사례2.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42세의 레즈비언으로, 상대 여성과 20여 년간 여느 이성애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함께 생활해 왔고 재산을 함께 모으고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가 휘두르는 폭력으로 인해 관계 해소를 원했으며, 이에 따라 파트너 여성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이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인의 상황과 구체적인 요구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며, 동성간의 동거관계는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그들의 이성애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

라, 가정폭력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마저 낳은 것이다.

- 일다, 2004년8월2일자, '법원이 동성애자 차별과 폭력 조장하나'

3) 사회보장/ 연금/ 보험 수혜권

국민연금, 의료보험, 각종 민간 연금 및 보험, 가족수당, 경조사 부조 및 휴가 신청 등이 불가능하다. 이는 노후를 비롯해 미래를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된다.

사례1. _____

허여 씨와 그의 파트너는 결혼 전에 가입한 여러 보험에서 사망시 수익자로 서로를 지정하기 위해 친구 관계로 서명하여 일일이 전환해야 했다. 배우자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허여 씨는 요즘에는 동성혼 배우자라고 당당히 쓴다고 밝혔다. 그는 1년마다 계약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아예 배우자로의 변경을 받아주지 않고 있으며, 부부한정 특약 서비스 같은 보험회사의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프레시안 / 2006년 5월 23일자

사례2. _____

나는 레즈비언이다. 그녀와 동거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다. 그런데 어제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함께 내려가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장지까지 따라가고 싶지만, 회사에 경조사 특별휴가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이성애자라면 사실혼 관계에도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녀를 친구라고 밖에 소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전국인권활동가대회 <반차별 포럼-노동과 차별> 자료집, 2004년 8월

4) 기타 - 가족 단위의 혜택에서 소외

우리 사회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과는 나누지 못하는 혜택들이 있다. 신용카드 등을 비롯해서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동반가족 1인 등으로 규정된 각종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전근을 가거나 해외로 전근, 혹은 이민을 가게 될 때 가족의 동반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동성 커플간에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사례1.

S씨는 일본인 파트너인 K씨와 함께 나왔다. 만난 지 9년째, 동거한 지는 3년째 인 이들이 고민하는 것은 바로 K씨의 비자 문제다. 현재 K씨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취업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지만, 직업을 잃게 되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성커플과 달리 이들의 부부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만료되면 K씨는 한국에서 S씨와 함께 살 수 없다.

- 프레시안 / 2006년 5월 23일자

사례2.

저희는 지난 3월 7일 동성애자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 카페에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남자끼리 공개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선 OO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남자끼리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해놓은 규정이 없다”며 찝찝매더군요. 사실 헤매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우리 둘 중 누구를 신랑으로 적고 누구를 신부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공리 끝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동사무소는 여섯 시간이나 검토한 끝에 “선량한 미풍양속에 어긋나므로 접수 불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국어사전에 나온 뜻 그대로 ‘국민이 의무적으로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보고하는 일’이지 ‘허가’가 아니므로, 저희는 나라에 ‘결혼했음’을 알린 ‘정식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권단체, 동성애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동성혼인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정

식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 세계일보, 2004년5월20일, [마이내리티 리포트] "사랑도 결혼도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어요"

사례3. _____

5년째 동성 연인과 함께 동거중인 레즈비언 Q씨(30대 초반)는 2003년에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파트너 K씨는 떨어져 지내지 않기 위해 한국에서의 직장까지 정리하고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이성애자 부부와는 달리 법적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취업은 불법이라 할 수 없었다. 미국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역지로라도 학교를 다녀 학생 자격을 유지해야 해 한국에서는 필요 없는 학비 지출까지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1년 뒤 K씨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 자료 중 2005년 2월

5) 총평

이성간 커플과 동성간 커플이 똑같은 위치에 두고 볼 때, 단지 법적으로 부부관계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 주변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만으로 많은 불평등이 발생한다. 파트너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더라도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으며, 파트너가 사망을 해도 유가족이 되지 못하며 유산상속을 비롯하여 재산분할 등도 불가하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세금면제 등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직장에서는 가족수당, 경조사로 인한 휴가 등도 없다. 또한, 입양권과 인공수정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인권침해는 동성혼이 이성혼(이성간의 결혼)과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동성애자는 비정상적이고 이성애에 비해 열등하고 저급한 것이라는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런 까닭으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 인정은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평등을 실현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3. 차별 실태 해석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이제 한국사회에서 막 동성혼과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이왕에 판을 펼친 〈친구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연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힘있게 이끌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우선, 차별 실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실태와 현실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약간 서두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별 사례들을 분석하고 투쟁 전략을 짜고 목표를 설정하면서 한 번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에 대해 작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1)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 대한 집중

싸움의 결과보다는 싸움의 과정에 굉장한 집중도와 섬세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결과는 명확하다. ‘동성혼’이다. 동성간의 결혼은 허용될 것이다. 애당초 이것은 금지되어야 할 명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실 동성간 결혼을 금지시키는 것은 이성간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즉 결혼을 이성끼리만 하게 하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도 하게 해달라’는 것을 넘어서 처음부터 보다 분명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왜 너희만 결혼하려 하는가?”

이를 통해 결혼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차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결혼을 통해 가족이 형성되는 시스템에 대한 저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위해선 동성애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젯거리임을 인식시켜 함께 연대하여 싸울 이들의 수와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 즉, 가족구성권을 쟁취하는 과정에 있어 누구와 어떻게 함께 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졌을 때 아군이 부족해 열세로 밀리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혼을 ‘독점’ 하려는 음모에 저항해야 한다.

2) 가족의 정의에 대한 저항

민법에서 규정한 가족의 정의는 혈연으로 묶여진 사람이다¹⁾. 그러므로 가족은 함께 살지 않아도, 심지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핏줄이라는 증거 - 주민등록등본으로 대표되는 - 만 있으면 어디서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오로지 부부관계에 있어서만 핏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두 사람일 것을 요구한다. 이 두 사람에게겐 그래서 혼인신고를 통해 상징적인 차원의 핏줄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구성권 투쟁안에는 민법 779조에서 정의해놓은 '가족'의 정의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가족구성권에 대한 주장은 우리도 (동성애자들도) 너희들만큼 (이성간만큼) 영속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가족으로 봐달라고 주장하는 '애원'이나 '투정', '질투'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반대판들은 핏줄을 만드는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할 것이다²⁾.

3) 결혼과 가족구성권의 차이에 대한 인식

지난 5월에 있었던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를 취재한 프레시안 기사의 한 부분을 보자.

이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며 살고 싶은 것 아니겠냐"며 "현재 나와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가 내가 보살펴야 할 가족이며 나의 배우자이기에 사회로부터도 이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열거한 사례들이 차별이 되는 것은 당연히 똑같은 가족으로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가? 가족구성권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이다. 왜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필요한 것일까? 대체 가족을 구성할 권리란 무엇일까?

결혼이 아니어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결혼을 통해서 가족

1) 민법 779조에 따르면 가족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말한다.

2)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5월 13일 "신자들은 전통적인 이성간 결혼이 인류의 기둥 (pillar of humanity)으로 지켜야 한다"며 동성간 결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황은 이날 가족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러한 증언만이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이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면서 "동성애자들은 결혼에 따르는 책무는 배제한 채 똑같은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은 다른 말이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요구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결혼이 아니어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본다면 어찌보면 차별이 아니다. 어차피 동성애자가 아니어도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가족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은 이성간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래도 남녀간에는 사실혼이란 보완책이 있고, 혼인신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부부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가령, 부양을 책임지는 가족이 있는 미혼 이성애자가 기혼 이성애자와는 달리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가령 가족수당과 같은 경우, 이것은 하나의 독려책이다. 가족수당은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회사는 가족수당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다만 가족수당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애사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당 근로자가 지고있는 부양의 짐을 좀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거나 노부모, 어린 자식이 있을 때 조금 더 수당을 준다는 취지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미혼이라도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산다면 가족수당을 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 동성애자가 받는 불이익은 배우자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미혼자나 독신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차별을 주장한다면 이는 솔로 동성애자가 아닌 오로지 결혼을 할 정도의 파트너를 둔 동성애자들이 겪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4. 마무리하며

서둘러 원고를 마무리하는 품새를 감출 수가 없지만 허락된 시간 안에 우선은 이 정도의 논의를 풀어보고자 한다.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더욱 많은 토론과 논의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근래 염려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매우 예민한 반응과 명칭하기 짝이 없는 반응과 쓸모를 찾을 수 없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시급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동성애자로서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 보다 엄격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성애자와 똑같은 권리

를 갖기 위해서 이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똑같아 지기 위함이 아니라 다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족으로 하나 더 달아본다면, 법적 용어로 자주 쓰이던 배우자란 말의 한자는 配偶者였다. 성별의 의미가 없는 이 말이 그 말뜻대로 쓰이길 바라며…….

혼인인가 사회적 결합인가? 프랑스, 캐나다,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은우_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동성혼이 법률적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동성혼이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는 방식으로 현재 동성혼을 이성혼과 같이 혼인에 포함시키는 방식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결합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미국의 메사추세츠주는 동성혼을 이성혼과 동일한 '혼인'으로 보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프랑스나 미국의 하와이, 버몬트 등은 동성혼을 이성혼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결합으로 보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두 가지 방식이 갖는 차이와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각 방법을 도입한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본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동성혼을 새로운 사회적 결합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한 프랑스의 경험, 동성혼을 혼인으로 포함시킨 캐나다의 경험과 현재 각 주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경험을 간단히 살펴본다.

2. 프랑스의 경험

가.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도입 전

1997년에 최고민사법원(the Highest Civil Court)은 보통법상의 결혼(cohabitation, common law marriage)은 동성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은 법률적으로 동등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Velela v. Weil, 1997. 12. 17.). 이보다 전에 나온 판결 중에는 남성 동거인은 다른 남성 동거인의 항공티켓의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Secher v. Air France, 1989. 7. 11.). 프랑스의 법원은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나. PaCS의 도입 배경과 도입 당시의 찬반

이처럼 법원에서 계속해서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므로, 당시 유일한 해결 방법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1999년 도입된 프랑스의 PaCS는 동성 커플의 인정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법원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선택된 우회적 수단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미 덴마크에서도 10년 전에 도입되었던 새로운 형태의 관계(relation)가 1999년에 PaCS로 도입된 것이다. PaCS는 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제도로 도입되었는데, 혼인하지 않은 공동체(non-marital union)에 결혼(civil marriage)과 동거(concubinage)의 중간적인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 PaCS에 대해서는 혼인과 유사한 보호가 주어지되 결혼에 비해서는 해소하기도 쉽고, 법적인 보호가 약한 것으로 도입되었다.

PaCS가 도입될 때, 우파들은 반대를 하였다. 이들 중 대중시위를 시작한 그룹도 있었는데 반응이 냉담하자 중단하였다고 한다.

다. PaCS와 혼인의 비교

PaCS는 생활-주거와 성관계-을 같이 하겠다는 성인간의 계약이다.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결혼상태이거나 PaCS의 일방 당사자인 상태이어서는 안된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3촌, 4촌이어서는 안된다. 결합은 지방법원의 등기관 앞에서 선언되어야 한다. 파트너는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고, 양인 중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연대책임을 진다. 그러나 파트너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과, 상대방 파트너의 아이에 대해서 공동으로 친권을 갖는 것을 금지한다. 파트너들은 상대방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이 없다. 외국인의 경우 혼인의 경우에는 즉시

영주권이 허용되나 PaCS의 경우에는 1년 이후인 자에 대해서 재량에 의해서 허용된다. PaCS는 3년 후부터 혼인증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통합 과세(joint income taxes)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득세 통합 과세를 하면 분리 과세를 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한다. 부유세(Wealth tax; impot sur la fortune)도 PaCS가 도입된 1999년부터 통합하여 적용된다고 한다. PaCS는 혼인보다 형식이나 그 해소가 자유롭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해소는 이혼보다 쉬워서 일방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된다.

라. PaCS에 대한 비판과 2004년의 동성혼인과 논란

PaCS에 대해서는 도입 당시부터 동성혼에 대해서 이성혼과 동등한 효력을 주기 보다는 실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이성혼에 비해서 열악한 법적 지위를 보장할 뿐인 차별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PaCS의 시행 후 2001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PaCS는 70%의 지지를 얻었다고 한다. 1999년 시행 후 5년 동안 144,225 PaCS가 등록했고, 17,624 PaCS가 해소되었다고 한다

2004. 3. 17. Didier Eribon, Jacques Derrida, Aleain Touraine 등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므로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혼인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면서 '법원은 온타리오나 브리티시 콜롬비아, 메사추세츠의 선례를 따라 동성혼을 인정하고, 의회는 네덜란드나 벨기에와 같은 법을 제정하여 동성혼을 허용하고 이성혼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4. 6. 5. 전 녹색당 당수후보였던 보르도 시장 Noel Memere는 Bertrand Chaptentier와 Stephane Chapin의 동성혼을 주재하였다. Memere는 프랑스 법상 동성간의 혼인을 금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성혼인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유럽인권재판소(Europe Humanrights Court)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프랑스의 우익들은 동성혼을 막기 위해 PaCS에 대해 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04. 7. 27. 보르도 법원은 그 결혼은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프랑스 민법전에 '남편과 부인'(a husband and a

wife)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이는 가정의 기초인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2005. 4. 9. 보르도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했고, Charpentier와 Chapin은 이 판결에 대해 차별을 근거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은 결국 프랑스 법제도의 동성혼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으며, 동성혼 인정을 위한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논의는 PaCS에 부여되는 권리를 확장하는 것과 동성혼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PaCS의 시행 후 애초에 PaCS에 반대하던 우파에서조차 PaCS를 지지하고, PaCS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를 확장하는데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도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의 LGBT 그룹들은 동성 결혼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동성혼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당에서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당의 경우 Francois Hollande는 동성혼 인정법에 찬성하며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Segolene Royal, Lionel Jospin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였고(나중에 Segolene Royal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입장의 불일치로 사회당은 아직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3. 캐나다의 경우

가. 동성혼의 배제

캐나다는 동성혼을 이성혼과 같이 혼인에 포함시키는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엇갈린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애초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법원은 혼인의 요건으로 '이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혼인의 요건으로 다른 성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캐나

다 권리장전(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유와 민주 사회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하였다. 온타리오에서도 1993년에 지방법원에서 결혼의 요건으로 다른 성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법원은 결혼의 정의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조항도 이런 결혼의 정의를 바꿀 수는 없다고 보았다.

나. 동성혼의 합법화

그러나 1999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동성커플에게 결혼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많은 재정적 법률적 혜택을 동성커플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¹⁾. 그러나 동성혼을 이성혼과 같이 혼인으로 인정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실제적인 경제적, 법률적 혜택을 구울하고 있는 법들이 대부분 연방보다는 지방의 관할에 있었기 때문에 동성혼자들의 혜택은 주마다 달랐다.

그러다가 2002년 온타리오의 지방법원에서는 혼인의 요건으로 다른 성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와 함께 의회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만약 의회가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혼인의 정의조항은 자동적으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오늘날 결혼의 목적은 약속을 지키고,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보호, 일의 분담, 주거 공동, 정서적·재정적 상호지원, 자녀 양육 등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성혼이나 이성혼에서나 동일하다고 보았다. 동성혼과 이성혼의 유일한 차이점은 출산인데, 오늘날 결혼한 부부가 모두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며, 많은 아이들이 혼인 외에서 출산되고 있으므로, 출산이라는 것이 혼인의 요건으로 다른 성일 것을 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의회에 법을 고칠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동성혼에도 혼인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²⁾. 이 판결 이후 토론토 시는 동성혼을 혼인으로 등록해 주는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2. 9. 퀘백의 고등법원도 온타리오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판결을 했다³⁾. 2003년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도 동성혼을 혼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⁴⁾. 이 판

1) M. v. H. [1999] 2 S.C.R. 3.

2) Halpern et. al. v. Canada (Ontario Superior Court, July 12, 2002)

3) Hendricks v. Quebec (Quebec Superior Court, September 6, 2002)

4) Barbeau v. British Columbia 2003 BCCA 251 (Court of Appeal for BC, May 1, 2003)

결에서는 네덜란드의 법과 달리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아서 많은 미국인들이 동성혼을 위해서 캐나다로 왔다고 한다.

다. 대다수의 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됨

2003년 이후로 캐나다의 10개 주 중에서 8개 주에서 동성혼을 이성혼과 같이 혼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⁵⁾. 그래서 동성혼이 이미 캐나다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주에서 혼인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미 그 지역에서 3000쌍의 동성혼이 있었다.

라. 혼인법의 제정

이처럼 대다수의 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었지만, 주마다 결혼에 대한 법률과 해석이 달라서 통일적인 법률의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캐나다 정부는 동성혼을 인정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동성혼을 이성혼과 같이 혼인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 결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를 해 나갔다. 여론수렴과 논의의 결과 캐나다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요한 논거로 동성혼을 혼인과 같이 보는 혼인법(Civil Marriage Act ; 법 C-38, 시행일 2005. 7. 5.)을 제정·통과하였다.

첫째, 1999년부터 이미 결혼에 부수되는 중요한 혜택들이 동성혼에 부여되고 있었고 90%의 캐나다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미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둘째, 동성혼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캐나다의 권리장전에 부합한다. 동성혼을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사회적 결합으로 보고 혼인과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권리장전상의 차별금지에 부합한다. 혼인법의 제정시에 보수당에서는 반대

5) 동성혼이 합법화된 주와 특별구

- Ontario since 10 June 2003;
- British Columbia since 8 July 2003
- Quebec since 19 March 2004
- Yukon territory since 14 July 2004
- Manitoba since 16 September 2004
- Nova Scotia since 24 September 2004
- Saskatchewan since 5 November 2004
- Newfoundland and Labrador since 21 December 2004
- New Brunswick since 23 June 2005

를 했고, 자유당의 일부에서도 반대를 했다. 자유당과 신자유당, 퀘벡 블록에서는 대부분 찬성을 했다.

4.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도 동성혼을 혼인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1971년 최초의 소송이 제기된 이래 많은 소송이 있었다. 1971년의 최초의 소송 이래 동성혼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계속해서 내려졌었으나, 1993년에 최초로 하와이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결혼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성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 후 알래스카에서도 1998의 판결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헌법에 반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메사추세츠주에서는 2003. 11. 8. Goodridge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사건에서 동성커플의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주헌법에 반한다고 선고했다.

메사추세츠 주는 이 판결 이후로 2004. 5. 17. 부터 동성 커플 결혼을 허용해 왔다. 한편 메사추세츠의 판결이 내려진 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였다. 동성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그 후 2004년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의 시장 Gavin Newsom은 부시의 발언을 비판하며,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샌프란시스코는 동성혼을 등록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폭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2005. 2. 12. Del Martin 과 Phyllis Lyon의 최초의 동성혼 결혼식이 있었다. 이에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혼인 허가장의 발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여,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현재 동성혼을 배제한 것에 대한 소송은 California, Connecticut, Florida, New Jersey, New York, Oregon, Washington 등에서 진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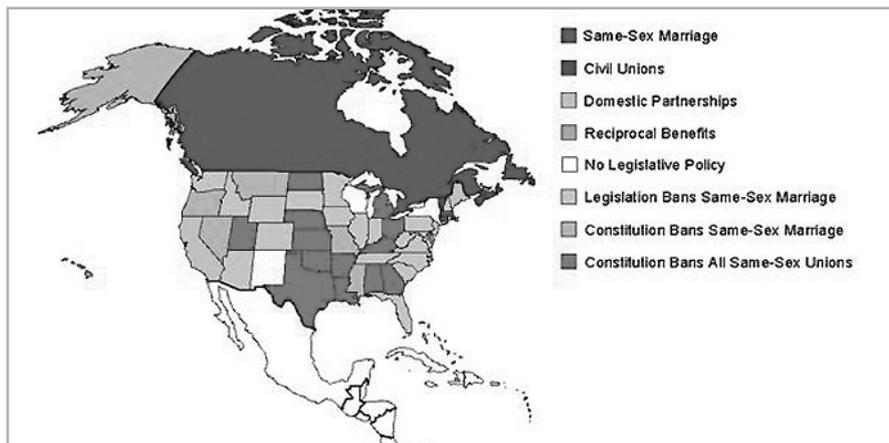
한편 2004과 2005에 13개 주가 결혼은 이성의 결합이라고 주헌법을 수정했다. 13개 주는 Arkansas, Georgia, Kentucky, Louisiana, Michigan,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Texas이다.

[미국의 각 주의 입법과정] - Wikipedia : Same-sex marriage in USA

State	Date	Type of same-sex union	주지사 서명 또는 거부	Final outcome
Hawaii	1997	Reciprocal Beneficiaries Relationship	Signed	Yes
California	1999	Domestic Partnership	Signed	Yes ¹⁾
District of Columbia	2000	Domestic Partnership	Signed	Yes
Vermont	April 2000	Civil Union	Signed	Yes
California	2001	Domestic Partnership (expansion)	Signed	Yes ²⁾
California	2003	Domestic Partnership (expansion)	Signed	Yes ³⁾
New Jersey	January 2004	Domestic Partnership	Signed	Yes
Maine	April 2004	Domestic Partnership	Signed	Yes
Utah	February 2005	Reciprocal Beneficiaries Relationship	-	No
Connecticut	April 2005	Civil Union	Signed	Yes
Maryland	May 2005	Domestic Partnership	Vetoed	No ⁴⁾
California	June 2005	Same-Sex Marriage	-	No ⁵⁾
Oregon	July 2005	Civil Union	-	No ⁶⁾
California	September 2005	Same-Sex Marriage	Vetoed	No ⁷⁾
Colorado	November 2006	Domestic Partnerships (Citizen Referendum)		

- * Note 1: Granted limited rights.
- * Note 2: Expanded rights included.
- * Note 3: Gave domestic partnerships legal rights of married couples.
- * Note 4: Maryland Governor vetoed legislation; a veto override would require two-thirds support.
- * Note 5: The vote failed to receive the absolute majority (41 votes) required to pass.
- * Note 6: The bill failed to come to a floor vo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Note 7: California Governor vetoed legislation; a veto override would require two-thirds support.

[미국의 각 주의 현황] - Wikipedia : Same-sex marriage in USA



[부록]

Civil Partnership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Suzanne Kingston, Head of Family at Dawsons)

Country	What sort of partnership	Open to whom?*	How registered?	Pre-registration agreement	Income and capital on dissolution of partnership
벨기에	Cohabitation legale (statutory cohabitation)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형제 자매라도)	등록해야 함	Pre-nuptial agreements are legally enforceable	No legal consequences unless the couple enter into an optional binding legal agreement.
벨기에	marriage	국적 불문 / 모든 동성, 이성 커플	등록해야 함	Pre-nuptial agreements are legally enforceable	Depends on reason for divorce. In a fault based divorce 'innocent' party has right to maintenance otherwise none.
Canada: 노바스코티아	Domestic partnership	Nova Scotia 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동성이나 이성 누구나	Certificate Application: Domestic partnership를 작성해야 함	Prenups enforceable	Parties enter into a separation agreement pursuant to the Maintenance and Custody Act and the court may order maintenance.
Canada: 퀘벡	Civil Union	이성혼이나 동성혼	승인된 celebrant가 있는 자리에서 공적으로 동의하고 선언에 서명해야 함	Prenups enforceable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함. 아이가 없는 경우는 공동선언으로 해소할 수 있음. 그러나 먼저 maintenance와 재산분할을 증명받아야 함.
캐나다	marriage	동성 또는 이성 혼	Marriage licence from City or town hall.	Prenups enforceable	배우자 부양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음. 재산분할은 지방법에 의해 결정됨. 혼전 재산은 제외하는 경우가 많음
덴마크	Registreret partnerskab (registered partnership)	동성커플만	Civil ceremony	Prenups enforceable	Maintenance is not common in Denmark but may be ordered by the court. Unless the partnership has lasted less than five years there is the presumption of equal division of assets. 'Capital' pension included in settlement but not pensions paying periodically.
잉글랜드 웨일즈	Civil partnership	동성커플만	Sign register in Registry office	Not legally enforceable however note K v K (2003) which suggests consideration will be given to prenups	Full range of financial orders that are available on divorce. This includes maintenance, lump sum payments and pension sharing.
Finland	Rekisteroitu parisuhde (registered partnership)	동성커플만	Signing of partnership document in the presence of an authority entitled to perform civil marriage	Prenups enforced. New law applies that couples must decide before marriage the law of which country will govern the marriage.	On dissolution the court may order maintenance if one partner is deemed in need. This will lapse if a new partnership is entered into. Under the 'Marital right' (which also applies to registered partnerships) there is an assumption that on dissolution assets will be divided equally. However any property excluded by the terms of a pre-nup (known as a marriage settlement agreement) will not be included in this calculation.

Civil Partnership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Suzanne Kingston, Head of Family at Dawsons)

Country	What sort of partnership	Open to whom?*	How registered?	Pre-registration agreement	Income and capital on dissolution of partnership
프랑스	Pacte civile de solidarite (PACS) (civil solidarity pact)	동성 또는 이성 커플	Apply through tribunal d'instance (Local civil magistrates court)	Pre-nuptial agreements legally enforceable for marriage but probably not for PACS	No financial consequences, such as a right to maintenance, attached to the end of the PACS.
독일	Lebenspartnerschaft (life partnership)	동성 커플만	Registration at a registry office	Pre-nuptial agreements enforceable but may not be if serious disadvantage to one party	Matrimonial property regime applies but differs from that for opposite sex couples.
네덜란드	Geregistreerd partnerschap (registered partnership)	동성, 이성혼	Registration by the registrar in the local municipality	See below	Rights and obligations same as for marriage (see below).
네덜란드	marriage	동성, 이성혼	Exchange of vows. Ceremony conducted by the registrar in the local municipality	Must take form of a notarial deed and be entered in a matrimonial property register.	Maintenance can be granted. Couples often agree to division of assets between them, through mediation. The court can intervene.
노르웨이	Registrert partnerskap	동성만	Joint registration in civil ceremony	Couple may enter into binding agreement concerning maintenance and other matters before after or during divorce.	Assets which are separate are kept by the owner. As a rule other property is divided equally but this is not mandatory and couples can decide differently if they wish so long as one partner is not disadvantaged. Maintenance is rare, only awarded when one partner has been caring for children and limited to three years unless the marriage/partnership has lasted more than 20 years.
스페인	marriage	동성혼, 이성혼	Apply through Civil Registry in Madrid or local district court	Enforced, unless detrimental to the children or seriously damaging to one of the spouses	On divorce property assets must be distributed between the spouses according to the rules laid down by the Civil Code or according to the pre-nup. Alimony may be ordered where an imbalance is created by the marriage breakdown.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과제와 전략

오가람 _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1. 들어가며

이 글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을 해 나가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움직임들이 이제야 막 걸음을 떤 상태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논의하려고 한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과 관련해서는, 2004년 3월 한국 최초의 공개 게이 결혼식과 같은 해에 6월에 있었던 퀴어문화축제 토론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가능한가〉의 개최로 관심이 환기되었고 또한 같은 해 7월 인천지방법원의 동성 파트너 관계에 대한 사실혼의 불인정 판결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2005년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조여울 연구책임)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등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 대한 기반은 간헐적으로나마 다져져 왔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동성 파트너십 법적 인정의 외국 소식 역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동성애 자체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많아지고 이에 대한 담론들이 더 많이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와 관련하여 제도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낮은 일이다. 또 한편으로는 2006년 들어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과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성적 소수자들의 시민권적인 목소리를 조직하고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데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동성애를 둘러싼 다양한 운동 지형과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전략을 간략하게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넘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본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을 진행해 나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유념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짚어볼 것이다. 여기에 이어 3장에서는 2장에서 논의된 바탕으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대략적인 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과제

(1) 시민권 운동과 가족 제도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첫 번째로 마주치는 문제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시민권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그것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족 제도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밑바닥에서 큰 긴장을 만들어낸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 있어서 시민권의 문제는 언제나 어려운 과제이다. 시민권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은 인권 운동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이라는 성격은 인권 운동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논리적 기반이다. 그러나 시민권 운동은 시민권을 인정하는 주체를 국가로 설정함으로써 국가의 독점적 권력을 확인한다는 점, 시민권의 작동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주어지고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는 포섭과 배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¹⁾, 시민권을 획득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차별이 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의 이유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가의 독점적 권력에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인정하라고, 이리이러한 집단들도 가족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할 때, 그렇다면 그 권한을 오로지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가족은

1) 앞의 두 시민권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동성 결혼 합법화와 관련하여 언급한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97-100쪽 참조.

제대로 된 가족이 아니라는 인식이 성립한다. 또한 그것은 배제와 포섭의 논리로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다른 가족 형태를 배제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내에서도 국가에 등록되는 가족을 이룬 사람들이 제도 안쪽으로 진입하여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는 한편, 그렇지 않은 동성애자들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시민권의 성격 자체를 문제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한계와 문제점을 수용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

시민권 운동의 또 다른 문제점은 시민권을 획득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백인들과 동등한 시민권을 확보하여도 실제의 생활에서는 여전히 일상적인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쟁취하여 동성애자 가족들이 제도적 권리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동성애자 가족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시선이 없어진다고나 다른 친척들에게 역시 인정받고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과 동등하게 생각되기는 어렵다. 물론 시민권 획득 자체가 가져올 동성애에 대한 커다란 변화는 작은 것이 아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는 대단히 크다. 이렇게 시민권 운동은 단지 어느 한 영역의 권리를 획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성애자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테두리로 제도적으로 인정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들이 중심에 있고 동성애자 가족들은 '특수'하게 '주변적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운동이 가족 제도에 대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현재의 가족 제도가 이른바 '정상 가족'²⁾ 이데올로기로 강력하게 구성되어 있는 만큼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제도에 편입해 들어가려는 시도로 기능하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동성애자가 가족구성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성애 중심적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가족 이데올로기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가족 제도 자체를 공고화할 수도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서 가족 제도는 쟁취해야 할 대상이자 억압의 현실, 억압할 미래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할 수 없다. 문제는 절

2) 이재인은 '정상 가족'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경제적으로 서민층 이상의 가족일 것, 성적 정체성에서 이성애자 부부일 것,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될 것, 자녀(특히 남아 1인을 포함한 자녀)를 가질 것, 그리고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필한 사람들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인, 「가족 차별 버리기를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가족' 차별 드러내기, 실천적 대안 찾기」,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자료집, 2005, 73쪽.

박함과 긴급함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재산 분할의 문제 등으로 당장 생존의 위기에 처하기까지 하는 등 다양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이러한 점들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 자체가 양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획득' 하고 가족 제도에 '편입' 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시민권을 '재구성' 하고 가족 제도를 '변혁' 시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를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제도화, 법제화를 위한 실천을 조직하면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낸 후에도 끊임없이, 끈질기게 이성애 중심적 가족 제도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파트너 관계 중심성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커플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인지, 여기서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서구에서의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대체로 동성 커플이 국가에 등록하고 여기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파트너십 등록제나 시민 결합(Civil Union), 결혼 등의 권리를 얻어 내었다. 한국에서도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은 동성 결혼의 요구 정도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서 동성 커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이 누릴 수 있는 결혼과 그에 따른 제도적 보호, 다양한 혜택과 권리들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차별의 문제이다. 또한 가족 제도가 근거하고 있는 이념이 애정과 안정적인 성관계에 기반한 두 명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동성 커플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일차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커플들의 관계에 대한 것만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먼저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운동은 기존의 가족 제도에 편입되고 그 제도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 커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족은 이성이 결혼하여 꾸린 가족의 변형물로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그리 많이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다른 다양한 가족들을 배제하는 일일 것이다.

동성애자가 현실적으로 구성하는 가족 관계의 모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성애자로서 구성하는 가족은 커플끼리 함께 사는 가족만은 아니다. 독신자 가구에 서부터 서로 의지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족, 홀로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이 존재할 수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또 친밀하게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해서, 노년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비혈연적인 가족들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³⁾ 따라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⁴⁾ 동성애자로서 구성하는 다양한 가족에 눈을 돌려 커플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족 등의 문제 역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물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포괄하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동의 집중도가 떨어질 위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3) '역풍'의 문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기존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 한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역풍'에 당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제도는 혈연주의에 강하게 매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나 경제 파탄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가족에게 떠넘겨 가족이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는 등 강한 가족주의 역시 자리 잡고 있다. 반면에 '가족의 해체'가 이야기되고 '정상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건강가족기본법이 생길 만큼 실재 가족의 양상은 기

3) 실제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06년 5월에 개최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발표 대회 '스피크 아웃'>에서는 커플 가족뿐만 아니라 게이 친구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가족이 나와 스스로를 가족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발표를 하였으며, 6월에 개최한 <동성애자가 선정한 '예쁜가족' 대회>에서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들이 어울려 사는 가족이 '예쁜가족'으로 신청하여 수상 가족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4)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 진영 일부에서 이 운동을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 '동성 파트너십 운동' 등으로 부르지 않고 굳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으로 이름붙이는 것은 이 운동이 "결혼이나 파트너십이냐"는 문제를 선뜻 결정하지 않았던 데에다가 이러한 점 역시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존의 가족 이념과 맞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움직임도 존재하고 있다. 이때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을 주장할 경우 기존 가족 제도를 유지하려는 흐름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 또한 한국에서 최근의 출산율 저하로 인해 출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출산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데도 동성애자 가족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 운동은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⁵⁾

이때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시민권 논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성애자가 가족구성권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을 끊임없이 직접적으로, 언론을 통해, 인권 단체들과 친 성적 소수자 정당, 학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필요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가족 제도와 출산율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계와의 연대 역시 시도 반드시 필요하다.

(4)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

마지막으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를 일궈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퀴어 커뮤니티 내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이것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었을 때에도 실제로 그 결과를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발생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제시된다. 첫째, 한국에서는 서구에서와 같이 이미 '가

5) 역풍'과 관련하여 동성혼을 법률로서 인정했을 때, 관습헌법의 판례를 지니고 있는 헌법재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상훈, 「美 대선이 한국 동성애자에게 주는 교훈,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홈페이지의 <레인보우 칼럼>, 2004년 11월 5일, http://www.ksccr.org/bbs/zboard.php?id=issue_rain) 그러나 현행 헌법재판 제도를 생각했을 때 동성혼 법률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받을 때에만 위헌법률심판청구나 헌법소원이 가능하므로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위의 상훈의 글에 지적한 바대로 결혼을 남녀 간의 관계로 못 박아 버리는 것으로 미국의 여러 주가 헌법을 개정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보수적인 헌법 개정 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것은 가능 성일 뿐이지만, 상훈이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곧바로 동성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반대로 동성혼 합법화의 방법으로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데,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 동성혼 불인정을 합헌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동성혼을 위헌이라고 도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동성혼 입법이 위헌으로써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은우, 「동성애자의 결혼과 가정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나?」,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가능한가』,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토론회 자료집 참조.) 물론 현재의 민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동성혼 합법화는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은우 변호사의 자문. 피터팬, 「동성애자 가족구성권과 법률적 차별」,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사업 준비 간담회 자료집』, 2006년 2월, 6쪽 참조.)

정'을 꾸리고 있는 동성애자가 별로 없어서 동성애자 대중에게 절체절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둘째,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문제보다는 취업 평등 등의 이슈가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점, 셋째 제도적인 가족 구성이 '공문서로 커밍아웃하기'를 의미하므로 취업 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는 점 등이다.⁶⁾

이러한 지적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성애자 대중들에게 '절체절명'의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는 동성애자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이슈이며, 특히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저소득 동거 가구나 가사 전담 가족원과 같이 계층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을수록 피해를 입기가 쉽고,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감안할 때 이것이 언제까지 동성애자로 '가정'을 꾸리는 수가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른다는 점에서, 또 취업 평등의 이슈를 다루는 것이나 동성애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 등은 위의 세 번째 지적에서와 같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과 맞물린 것으로서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또한 그러한 시각 역시도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시급함과 절박함을 인식하고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동성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지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꾀해 나가야 한다. 설령 가족으로 등록하여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일구어냈는데도 그렇게 많은 수가 등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적은 수에도 커다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최소한의 실효성은 담보한 것이다.

3.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전략 모색

(1) 무엇을 목표로 어떠한 과정을 거칠 것인가

그렇다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우선 동성애자 가

6) 상훈, 같은 글 : 조여울 연구책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 123쪽

족구성권 운동이 목표로 하는 지점은 어디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목표는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견지해야 할 이념적 측면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이성애 중심적이고 혈연 중심적이며 혼인신고를 필한 이성 부부와 그 자식을 중심으로 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단지 동성애자 가족이 기존 가족 제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대안 가족’ 운동과 손을 맞잡으면서 가족 제도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성애자가 결혼을 독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⁷⁾, 결혼과 혈연을 가족의 궁극적인 상태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기본권들을 가족 제도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⁸⁾를 물으면서 가족 중심의 복지 제도 등을 문제제기 하는 등 이를 해결하는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사회 제도 및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⁹⁾.

실천적이고 과정적 측면에서는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서는 “성적소수자인권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동성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사전 단계로서 정부나 법원”이 “구체적으로 기본 법률 내의 배우자의 권리를 개별 법 조항에서 확대 해석”하도록 하게 한 이후, “정서적, 경제적 동거 커플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을 “1단계 : 상징적 차원의 ‘파트너십’ 등록제도 실시”, “2단계 : 공공기관 및 기업, 시행규칙 등에서 파트너십 인정”, “3단계 : 파트너십 관계의 법적 권리 확대”의 단계를 거친 후, “결혼 제도의 완전 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제안하고 있다¹⁰⁾.

적어도 파트너 관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 있을 여지도 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결혼을 양성의 결합으로만 보는 민법에 대해 위헌소송

7) 한채운, 「외국의 동성 결혼 현황」,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가능한가』, 쿼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토론회 자료집, 20쪽.

8) 이종현, 「대안가족 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사업 준비간담회 자료집』, 2006년 2월, 18쪽.

9) 이재인, 같은 책, 73쪽.

10) 조여울 연구책임, 같은 책, 122-127쪽.

을 제기하는 방법도 시도할 수 있다.¹¹⁾ 그러나 이러한 단계만을 생각했을 때에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파트너 관계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해 공동체 가족과 같은 동성애자가 구성하고 있는, 또 앞으로 구성할 다른 형태의 가족이 배제되어 버린다. 또한 결혼이 이성애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동성애자들 역시 그 권리를 가져야 차별이 시정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결혼을 동성애자가 쟁취해야 할 궁극적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결혼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를 낙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면 이와 다르게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제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 하는 과정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종의 ‘대안 가족’으로서 기존 가족이 가지는 권리와 혜택을 개방하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파트너 관계에 대한 과정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즉 포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 속에서 파트너십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나갈 것인지,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와 별도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누가, 누구와 연대하여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누가, 누구와 연대하여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역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주체는 물론 동성애자들이어야 한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성적 소수자 인권 단체들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위한 공동의 테이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성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요구를 벌일 때에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연대하여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 속에서 위와 같이 목표와 과정들을 설정한다면, 또 다르게 ‘대안 가족’ 운동을 펼치는 진영과 성적 소수자 운동 진영이 긴밀하게 연대하는 조직체를 제안해볼 수 있다. 성적 소수자, 장애인, 여성, 비혼 동거 커플, 공동체 가족, ‘시설’ 생활자 등 다양한 집단이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여성계, 성적 소수자 진영 등이 모여 다양한 가족 구성과 관련한 연구 모임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모임과 같이 함께 모여 공동 연구와 사회적, 정책적 실천을 기획하

11) 현행 민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는 이 글의 각주 4) 참조.

고 실행해 나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특히 이러한 조직체를 통해 가족 구성 차별의 현실을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며 실질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¹²⁾.

성적 소수자 진영의 연대체인든, 다양한 가족 구성을 위한 연대체인든 여론 형성 등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들, 힘을 실을 수 있는 다양한 연대의 구성,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의 형성, 입법 투쟁 제도적 실천들을 기획하고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입법 투쟁에 있어서는 2006년 출범한 <성전환자 성별 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활동은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다.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 진영과 민주노동당 및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성전환자 실태 조사,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안 구성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만든 법안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안 발의 이후의 활동 역시도 주목된다. 물론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과 관련한 것과 달리 이미 발의된 적이 있고 사회적 여론의 지형이 다르므로 더욱 새로운 형식의 고민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의 이슈를 이를 지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결합으로 보다 현실성 있게 다가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과정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4.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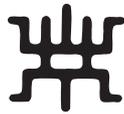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주체적 역량을 확보하는 일에서부터 목표와 전략을 조율하고 설정하는 일, 가족 제도와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인 집단들의 반발까지 맞닥뜨리고 넘어서야 할 문제들이 대단히 많을 것이다.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의 상시적인 활동이겠지만,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성과가 충분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지난한 과제이다.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적 소수자 운동 진영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을 온전히 장악하고 인권의 이념을 견지하면서 현

12) 2005년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가족 차별과 관련한 조사가 있었다. 위의 『가족 차별 드러내기, 실천적 대안 찾기』,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자료집, 2005. 참조. 가족 제도 안팎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매우 다양한 측면에 걸친 조사이다.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실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 역시 어려울 수도 있다¹³⁾.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제대로 쟁취하지 못할 리는 없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을 더욱 전략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해 나가면 된다. 폭넓은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면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관점과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켜 나갈 수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은 거스를 수 없는 미래다. 이제 좀더 잘 그 권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때이다.

13) 이른바 '김홍신 법안'으로 불렸던 성전환자 성별변경법이 당사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거의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던 사례처럼, 최근 한국에서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시민권의 문제들이 당사자들이 충분히 개입하지 못한 채 위에서 부과되는 방식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과 관련해서는 동성 결혼 등 동성 파트너 관계를 제도화하는 외국의 흐름에 맞추어 법적인 요구로서 위로부터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2005년도에는 헌직 판사가 "동성 사이 생활공동체에 이성간의 결혼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동성간 생활공동체법안 마련하자">, 《한겨레》2005년 12월 14일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110-370)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183번지 묘동빌딩 302호
TEL:02-745-7942 FAX:02-744-7916 www.chingusai.net | chingu@chingusai.net

이 사업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협력사업이며,
이 사업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